

보도 일시	2022. 8. 30.(화) 11:00 8. 31.(수) 조간	배포 일시	2022. 8. 30.(화) 09:00
담당 부서	농업생명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세진 (044-201-2371)
		담당자	사무관 안영창 (044-201-2374)

유실·유기 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 운영(9.5~10.31.) -

< 주요 내용 >

□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 운영(9.5~10.31.)

○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홍보반을 편성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절차, 입양지원금* 및 교육 등 안내·홍보

*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등에 사용되는 총비용 중 60%(최대 15만 원)까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실·유기동물 입양활성화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전국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269개소 '21년 기준)에는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유실·유기동물이 구조되어 보호받고 있으나, 이 중 일부만(45.2%, '21년 기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18년도부터 입양비를 지원 하는 등 입양률 증가에 노력해 오고 있으며 최근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활용하여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이 협력하여 홍보반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입양 절차, 신청 방법 및 관련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입양비 지원, 입양 예정자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는 입양비를 지원한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동물병원 진단비·치료비, 미용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마리당 사용한 총비용 중 60%까지, 최대 15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예시) 입양자가 지원항목으로 25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정부가 15만 원을 지원 (다만, 지자체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금액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비 지원 등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시·군·구)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에서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 (apms.epis.or.kr)’를 통해 반려동물의 입양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입양 예정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련 정책과 반려동물 공공 예절(펫티켓) 등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 (주요 내용) 입양 전 마음가짐, 반려동물 건강관리, 기초훈련 방법 등

농식품부 김세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유기된 동물을 입양하는 일은 오랜 시간을 함께할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신중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이번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많은 유실·유기동물이 새로운 주인을 찾고, 올바른 동물보호 인식과 반려동물 입양 문화가 확산·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 절차
2. 2022년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개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검색**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을
통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 검색



동물보호센터 방문

- 동물보호센터에 방문(전화 문의)



입양 상담

- 동물보호센터 관계자와 입양 상담
- 입양희망자가 적절하게 사육·관리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입양 희망자에게
적합한 동물을 추천
- * 반려동물 입양전 교육 이수 권장
(동물사랑배움터-반려동물 입양 예정자 교육)



입양 결정

- 입양설문지, 입양신청서, 입양확인서 작성
- 동물의 건강상태·특성에 대해
설명, 목줄 사용, 인식표 부착 외출 등
안전조치 및 반려동물
공공예절(펫티켓) 관련 교육

□ **지원대상** : 지방지차단체장이 설치·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동물을 입양한 자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단체가 입양한 경우, 해당 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에게 입양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내용** : 동물등록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등

□ **지원비용** : 최대15만원(국비7.5,지방비7.5)

○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 15만원 지원

○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 소요비용의 60%지원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거나,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추가 지원 등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 **신청서류** : ①입양비 지원신청서 ②입양확인서 ③진료비 등 영수증 ④입금통장 사본 ⑤신분증 사본 ⑥동물등록증

⇒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입양확인서, 동물등록, 통장명의자 등)

* 동물보호단체: 신청서,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 및 단체가 개인 입양자에게 발급한 확인서), 단체등록(허가)증사본, 동물등록증(개인 입양자에게 변경 신고된 등록증), 단체 통장사본

○ 신청서류 제출방법 : 동물보호센터 방문 접수,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 방문접수 또는 FAX, 담당자 이메일

* 입양비 신청 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 필요

□ **기타 행정사항**

○ 동물등록(고양이 포함*)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

○ 신청서류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지급

【입양비 지원절차】

